#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정호

문진석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안태준 • 윤후덕 • 이연희

임미애 • 한정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.

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##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 중 "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"를 "「사회보장급 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신고의무 등) ① 다음 각	제6조(신고의무 등) ①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
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			
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			
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			
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			
신고체계(이하 "경찰신고체계"			
라 한다)로 지체 없이 신고하			
여야 한다.	·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	4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・제		
<u>에</u>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	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		
	<u>법률」 제43조에</u>		
5. · 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